

"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재단 "

『복무규정』일부 개정(안)_수정

2019. 01. 11.

문서번호	인재경영팀-829	선임	인재경영 팀장	지원본부 장	대표이사	
결재일자	2020.01.13.	01/11	01/13	01/13	전결01/13	
글세크시	2020.01.13.	<u> 박주은</u>	강경남	김상헌	최경란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(73)호					

추진근거	-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 및 동의요청 회신 (노동조합-103, 2019.12.03.) - '19.12.24 이사회 수정가결에 따른 수정내용 반영			
부서(단체)명 협의내용 협의결괴				
대 내 외	노동조합	내규 개정 의견청취 및 동의 여부 요청	의견청취 및 동의	
더 데 되 협력현황				
사 업 비				

[※] 문서내용을 위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세요.

서울디자인재단 (인재경영팀)

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✔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✔' 표시					
	시 민:	유 🗆 ()	무 🗸	
시 민 참 여	이 해 당 사 자 :	유 🗆 ()	무 🗸	
고 려 사 항	전 문 가:	유 🗆 ()	무 🗸	
	옴 브 즈 만 :	유 🗆 ()	무 🗸	
	법 령 규 정 :	교통 🗆	환경 🗆	재해 🗆	기타 🗆	무 🗸
법령및기타		고용효과 🗆	노동	인지 🗆	균형	인지 🗆
고 려 사 항	기 타:	취약계층 🗆	성인지 □	장애(인 🗆	디자인 🗆
		갈등발생 가능성	; □	유지관리 비	용 🗆	무 🗸
	중 앙 부 처 :	유 🏻 ()	무 🗸	
타 자 원 의 활 용	민 간 단 체 :	유 🗆 ()	무 🗸	
	기 업:	유 🗆 ()	무 🗸	
관 계 기 관	관 계 기 관 :	유 🏻 ()	무 🗸	
및 단체 협의	관 련 단 체 :	유 (서울디자인제	대단 노동조합)	무 🗆	

『복무규정』일부 개정(안)_수정

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1. 개정사유

- □ 관련 법률 개정 및 단체협약 내용 반영
- 시행근거 :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개정안(2019.10.01.) 및 『2018 단체협약』(2018.12.14.)』
- □ '19.12.24 이사회 수정가결에 따라 수정내용 반영

2. 주요골자

- □ 『복무규정 제28조(모성보호)』관련 조항 개정
- 제28조 4항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주당 근무시간 개정 (주 15~30시간 -> 주 15~35시간)
- : 日 최소 2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-> 日 1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
- 제28조 5항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사용 기능기간 개정
 - :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법적 육아휴직 기간(1년)과 별도로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1년 보장, 재단 육아휴직인 총 3년 범위 내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최대 2년 사용가능 (법적 육아휴직 1년 사용 시)
- 제28조 8항 '육아휴직' 기간 개정 (3년)

구 분	현 행	개 정	개정근거
제28조 (모성보호) 4항	주 15~30시간 근무	주 15~35시간 근무	남녀고용평등법 개정('19.10.01)
제28조 (모성보호) 5항	-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최대 1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기간 3년 이내, 분할 1회만 가능)	-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최대 2년 사용 가능 (육아휴직 기간 3년 이내) - 분할 제한 없음 (단, 1회 사용 시 3개월 단위 사용)	남녀고용평등법 개정('19.10.01)
제28조 (모성보호) 8항	육아휴직 2년	육아휴직 3년	2018 단체협약

- □ 『복무규정 제32조(청원휴가) 2항 및 별표1』개정
 -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10일 유급) 및 분할 허용
 - 난임치료휴가(3일 부여, 1일 유급) 신설

구 분	현 행	개 정	개정근거
제32조 (청원휴가) '배우자출산휴가'	1) 3~5일 (최초 3일 유급) *단, 2018 단체협약에 의해 5일(유급)으로 시행 중 2) 분할 불가 3)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완료	1) 10일(유급) 2) 분할 1회 가능 3)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완료	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항
제32조 (청원휴가) '난임치료휴가'	복무규정 내 명시없음 *단, 2018 단체협약에 의해 '난임치료휴가' 시행 중	3일 (1일 유급) 신설	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3항

3. 참고사항

- □ 특이사항: '19.12.24 이사회 수정가결 내용 반영 (개정조문 일부 수정)
- 제28조 8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을 표시, 10항 별도 신설
- □ 시 행 일 :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 ('19.12.24.)

기존 복무규정	이사회 상정안	수정가결안			
제28조(모성보호)	제28조(모성보호)	제28조(모성보호)			
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	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그 총	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그 총			
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 을 넘을 수 없다.<개정 2018.05.30.>	기간은 3년 을 넘을 수 없다.	기간은 3년 을 넘을 수 없다.			
1.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	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하되 1회의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	< 삭제> 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1회에 한하여 나누어사용할 수 있다.			

기존 복무규정	이사회 상정안	수정가결안
3. 육아휴직의 분할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분할 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	하고 계약직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.	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계약직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.

[별 지] 1. 이사회 수정가결 이후 신·구조문 대비표

[붙 임] 1. 기존 복무규정 개정안 및 이사회 수정가결 이후 개정안 전문 각 1부. 끝.

[별 지]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 안

제28조(모성보호) ①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-중략-

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 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
-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.

-중략-

- 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.<개정 2018.05.30.>
- 1. 육아휴직의 1회 사용
- 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
- 3.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

제28조(모성보호) 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12.24.>

-중략-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12.24>

- ④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12.24.>
- (5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동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9.12.24.>

-중략-

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그 총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.

<삭제> <개정 2019.12.24.>

현 행			개 정 안			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(1회만 할 수 있다)			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2019.12.24.>			
			수 (기긴 계익	아기 근로시간 단축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'은 3개월 이상이 되야 '직의 경우 남은 계익 설 2019.12.24.>	사용하는 1회의 어야 하고	
제32조(청원휴가) ① 직원이 <별표 1>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주어야 한다.			하는	제32조(청원휴가) ① 직원이 <별표 1>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주어야 한다.		
출산을 (의 범위(다. 이 경유급으로	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유급으로 한다. <신설 2013.10.24.>			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<개정 2019.12.24.> ③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		
③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.<신설 2013.10.24.> ④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 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			할 수 없다. <개정 2019.12.24.> ④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 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			
가산할 수 있다.			H우자 출산휴가는 1호 사용할 수 있다. <신수			
<별표1> 청원휴가 대상 기간			<별표1> 청원휴가	대상 기간		
구분	대 상	일 수	구 분	대 상	일 수	
출산	3일~5일 (최초3일유급 당사 배우자	3일~5일 (최초3일유급) <개정	출산	배 우 자	10일(유급)<개정 2019.12.24>	
		2013.10.24.>	난임 치료	본 인	연간 3일 (최초1일 유급) <개정 2019.12.24>	

부칙 제1조(시행일)

현 행	개 정 안
	이 규정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